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학생인권조례 정착화 촉구 및 학생인권 수호 결의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

- 때 : 2012년 5월4일(금) 11:30
-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차 례

사회 : 배경내

1. [여는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 경과,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죽이기 시도의 문제점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각계 규탄과 결의 발언

- 교사, 청소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 1.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죽이기에만 골몰할 것인가

교과부 학칙개정 지시와 학칙개정 매뉴얼의 문제점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 폭력과 차별 없는 교육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의회의 민주적 논의와 결정 과정을 거쳐 탄생한 시민입법과 교육자치의 결실이다.
- 학교현장에서 폭력과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 멀게는 1980년대 후반부터 타오른 교육 민주화의 함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가까이 1990년대 중반부터 터져 나온 ‘학생도 사람이다!’라는 당연한 외침을 이어받아 학교를 인간화, 민주화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4차에 이른 한국정부 보고서를 검토한 끝에 내놓은 최종권고에서 연거푸 지적한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의적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 체벌을 명확히 금지할 것, 차별 받는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취할 것, 집회의 자유종교의자유표현의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 등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맞춰 나가려는 한 걸음이다.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로부터도 탄생을 축하받은 바 있다.

■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죽이기’의 역사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직후, 교과부는 체벌을 합법화하는 한편, 학칙을 통해 교육질서 등 모호한 명분으로 학생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 움직임에 시동을 걸.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입법예고함. 그러나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았고 이어 3월 14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벌은 금지’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 학교장에게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비판을 의식해 삭제. 그러나 교과부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따르더라도 ‘교육벌’은 허용된다면서 간접체벌을 유지시키는 내용의 해석을 유지.
- 2011년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되고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서울시장이 물러나자 교과부는 한동안 눈치를 보는 중이었음. 그런데 9월 7일, 박노현 교육

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되자,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압을 행사하였음.

- 2011년 9월 21일 박노현 교육감이 수감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임승빈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유지. 그러자 보수성향 단체들이 임승빈 부교육감의 경질을 촉구했고 이어 부교육감이 자진 사퇴하였음. 후임으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임명.
- 2011년 10월 5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체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대영 부교육감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함.
- 2011년 12월 19일, 보수성향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마침내 서울시의회를 통과. 이에 앞서 11월말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되는 쾌거를 이루었음.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마자, 교과부는 조례 통과에 대해 곤장 우려를 표명. 이후 교과부가 이대영 부교육감을 내세워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
- 2012년 1월 9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공포 시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 재의를 요구.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재의 요구였음. 그러나 같은 달 20일 박노현 교육감이 1심에서 석방되면서 조례 재의 요구를 자진 철회하였음.
-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교과부는 애초 조례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던 말까지 뒤집으면서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이튿날, 교육청이 학칙 개정을 지시하자, 교과부는 학칙 개정 중단 명령을 내리고 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자 학칙개정 정치처분을 내림.
- 2012년 2월 16일,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이어 4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두발복장 규정, 휴대폰 규정 등을 학칙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학칙을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들어 개정(애초에는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었음)하도록 하였음. 시행령을 개악하면서 교과부는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정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못 박음. 시행령에서는 다만 학칙의 형식만 정하고 있을 뿐 내용은 정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성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
- 2012년 5월 3일,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각 급 학교에 학칙을 재개정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였음. ‘두발복장 규정 등은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고,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각 급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사망을 선포. 더불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였음. 헌법,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인권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음.

■ **교과부 학칙개정 지시와 매뉴얼의 문제점**

-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나, 조례의 효력 자체가 정지된 것은 아님.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칙에 '두발복장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음. 학내 구성원이 협의하여 학칙을 정한다 하더라도,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임. 따라서 학내 구성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발복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뿐임. 이는 기업체에서 사내규칙을 노사합의에 따라 정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기준보다 더 상위의 기준을 노사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임.
- 더구나 학생·학부모·교사의 합의에 의해 학칙을 개정할 경우, 실제 권리의 주인인 학생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조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의견과 존엄성을 적극 보장함으로써 교육3주체의 동등한 관계 형성을 돕고자 마련된 소수자 보호 조례라고 봐야 할 것임. 그럼에도 합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교과부의 해석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님.
- 그럼에도 교과부가 명백한 '과잉 해석'을 통해 학칙 개정의 방향을 유도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반기를 들도록 학교 현장을 독려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분위기를 공공연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임.
- 교과부 매뉴얼을 보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초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학교 사정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해도 그만 개최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으로 되어 있음. 학칙 개정 시 유념해야 할 기준에 교육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 12조(개성실현권, 복장 제한 관련 조항), 13조(사생활의 자유,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관련 조항), 17조(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관련 조항)

- 모델로 제시된 학교 사례들도 두발 자유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한 다음 두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 신발 종류까지 정해주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학칙 준수 방안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불허하고 있는 서약서 작성 강요, 서약식 개최까지 권하고 있음.
- 생활평점제(상벌점제) 운영 방안에서도 상점의 예시로 규정위반 제보나 신고(친구를 밀고하면 상점

을 준다는 항목)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교육벌에 대해서도 “고통의 종류가 정신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는 교육벌을 정의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벌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단계의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고 하여 간접체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자료 2.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서울학생인권조례 탄생과 시행 경과

■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 ▷ 80년대 말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움트기 시작.
-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1년 대한민국 정부 가입.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1차 협약 이행 권고 발표.
-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시도. 당시 교실붕괴 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중단.
- ▷ 2000년 이른바 ‘노컷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를 중심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전개. 청소년/비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짧은 기간 16만여 명의 서명이 모임.
-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 발표. 1,2차 권고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이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지면서 유관단체와 교육계, 시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 계기를 마련.
- ▷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미션스쿨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교과부 지침이 보완되기 시작.
- ▷ 2005년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이 개최되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들끓기 시작. 학내 종교 자유, 선거권 인하, 정보인권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등 청소년인권 운동의 의제 역시 확산되기 시작.
- ▷ 2006년 17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면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이 전개. 각계 단체들이 모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법 제정 운동,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전국행진 등을 통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요구.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신설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 2008년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과 관련된 교과부 지침이 모두 폐지되고, 교육청 차원의 자율 지침으로 변경.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여건 조성
- ▷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이 담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학생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권리회복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2010년 9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
- ▷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 당선. 서울, 광주, 전북 등 교육청 산하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구성
- ▷ 2011년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최종 성사
- ▷ 2011년 10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 ▷ 2011년 11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 ▷ 2011년 12월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 ▷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요 경과

- ▷ 2010년 5월,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감 후보들,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 ▷ 2010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전면 금지 계획 발표
-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 ▷ 2010년 9월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 ▷ 2010년 10월 5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 ▷ 2010년 10월 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 ▷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 ▷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 ▷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 ▷ 2010년 11월~12월 :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 이후, 몇몇 언론들의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보도 급증. 서명운동 주춤.
-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1월말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 ▷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120여개교가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상반되는 학교생활규정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추진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에 버티기로 일관.
- ▷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2011년 2월 8일, 영하의 추위를 뚫고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돌입. 주말 집중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 ▷ 2011년 2월 1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코트코대회> 개최
- ▷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 ▷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결정.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 발표.
- ▷ 2011년 3월 6일~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 ▷ **2011년 3월 8일 : 서울 중암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 ▷ **2011년 3월 14일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으로 삭제. 그러나 간접체벌 허용의 불씨 남겨.
- ▷ 2011년 3월 14일~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창우 시인/작곡가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 관련 높은 공감대 형성
- ▷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 ▷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 ▷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5281명**의 서명 취합.
- ▷ 2011년 5월 11일~19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 2011년 5월 20일 10시 30분,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 ▷ 2011년 6월 22일~26일 주민발의 보정(추가 서명) : 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닷새 간 추가 서명과 정보가 누락된 서명지에 대한 보정 작업 진행. 1만5천여 장을 목표로 추가 서명을 받았으나 3만장이 넘게 서명지가 모임.
- ▷ 2011년 6월 27일~7월 4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 2011년 7월 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 ▷ 2011년 8월 4일, 법제심의 거쳐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 ▷ 2011년 9월 7일, 광노현 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 ▷ 2011년 9월 8일, 교육감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공청회 개최. 주민발의안에 비해 상당수 후퇴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본부 이름으로 강력한 수정 요구
- ▷ 2011년 9월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 재검토 필요하다’며 외압 행사
- ▷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불필요한 반대 중단 촉구.
- ▷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초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 인권의 원칙에 근거한 조례안 마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 책무 확인.
- ▷ 2011년 9월 2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학생들 여러 명의 얼굴에 대걸레를 문지르는 ‘대걸레 체벌’ 사건 발생. 이튿날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해당 교사의 사과가 있었지만, ‘훈육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며 문제를 축소.
- ▷ 2011년 9월 21일,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기소. 교육감 직무정지.
- ▷ 2011년 9월 28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의제에 대하여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지속 추진과 지연, 무산까지 다양한 해석 나와.
- ▷ 2011년 9월 2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 11곳,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정책 등을 방조해 온 임승빈 권한대행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교과부에 경질 촉구.
- ▷ 2011년 9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입법 예고는 언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 ▷ 2011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
- ▷ 2011년 10월 5일, 광주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 ▷ 2011년 10월 6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 3.4차 보고서(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이행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대해 최종 권고 발표. 체벌 금지, 청소년 비혼모·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 마련, 학생의 의견 존중, 종교 자유 보장, 정치활동에 대한 아동의 능동적 참여 보장 등을 권고.
- ▷ 2011년 10월말,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 확정. 그러나 **교과부에 의해 새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육청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
- ▷ 2011년 11월 17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선포
- ▷ 2011년 11월 22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후퇴 없는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
- ▷ 2011년 11월 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성사**
- ▷ 2011년 12월 13일, **교총 등 보수단체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결성.** 서울학생인권조례 부결 촉구
- ▷ 2011년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서울시의회 농성 돌입.** 각계 농성 지지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 2011년 1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등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주민발의안 심의하다 결정 연기
- ▷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통과.** 민주시민의 힘을 모아 주민발의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조례 통과에 대한 우려 표명
- ▷ 2011년 12월 27일, 서울시의회에 조례 제정 감사패 전달
- ▷ 2011년 12월 29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움직임'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위법 위반, 공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함.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11월 21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때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던 것을 뒤집는 것인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지가 확인되었고 주민발의로까지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아닌지 질의.
- ▷ 2012년 1월 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축하 공식 서한을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에게 발송**
- ▷ 2012년 1월 5일, 서울시교육청 앞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2년 1월 9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이 경우 서울시의회 2/3 찬성을 얻어야 조례가 확정될 수 있음.**
- ▷ 2012년 1월 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
- ▷ 2012년 1월 16일, '학교폭력 희생자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촉구 촛불집회' 개최. 죽음을 양산

하는 교육을 넘어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호소 터져나와.

▷ 2012년 1월 2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조례 재의 요구 철회.**

▷ 2012년 1월 25일,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개최. 학교 폭력에 대한 침묵과 방관, 악순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혁신학교 실험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가 주목 받아.

▷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조례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바 있으나,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곧장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

▷ 2012년 1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 2012년 1월 30일, 교과부 학칙 개정을 중단하라고 시정명령

▷ 2012년 2월 15일, 교과부, 학칙 개정 지시 정지처분

▷ 2012년 2월 1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칙 규정 사항으로 두발복장 규정 포함, 학칙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 2012년 2월 2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등, 교과부 시행령 개악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12년 2월 27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2년 2월 2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칙인가권 폐지를 근거로 일선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긴급 논평 발표

▷ 2012년 2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정지처분 취소소송 청구

▷ 2012년 4월 17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정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못 박음. 시행령에서는 다만 학칙의 형식만 정하고 있을 뿐 내용은 정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성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

▷ 2012년 4월 20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 공포

▷ 2012년 5월 3일,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에 학칙을 제개정하라는 안내문 발송 지시. ‘두발복장 규정 등은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고,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각급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사망을 선포. 더불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 2012년 5월 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맞아, 조례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학생인권 수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자료 3.

[성명서]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자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교과부를 강력 규탄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다시금 축하하며 백일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었던가. 오랜 세월 무참히 짓밟혀왔던 학생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해 쓰인 우리 사회의 진실한 반성문이었다. 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거름 삼아 키워낸 시민입법의 결실이었다. 교육의 대상, 미성숙한 존재로만 치부되어 왔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부터 원천 배제 당해왔던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성세대의 연대 서명을 모아내어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주인이 교육청도 의회도 아니라 시민과 청소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시민과 청소년의 열망과 기대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행정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학생들 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학교의 변화를 바랐던 학생·교사·학부모의 기대는 학교 현장에서 시궁창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놓고 조례를 조롱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이거나 한지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조례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진작 설치되었어야 기본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선거나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만 얽매어 눈치 보기로만 일관한 채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방기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좀더 근본적인 책임이 교과부에 있음은 명명백백하다.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고 조례의 전국화 물결이 가속화되자 조례를 죽이기 위한 총공세를 펴부어 왔다. 교과부 장관이 지명한 부교육감을 앞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 조례 무효 소송 제기, 학칙 개정 정지 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에 이르는 갖가지 술책들로 인해 서울시민의 열망은 손발이 모두 묶인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일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조례에 구속될 필요없이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매뉴얼을 통해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정치 공세에 서울시교육청 관료들마저 겁을 집어먹고 있는 형국이니 그 모습을 안쓰러워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짓밟고 있는 주범이 바로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라고 단언한다.

교과부에 묻는다. 교과부가 이토록 갓 싹트기 시작한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과부 정책에 협조적인 학교장의 권한만 지켜주는 것이 과연 학교 자율성인가.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관료들이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의 존엄은 폭력적·차별적 학교환경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치졸한 공격과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생명은 질기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와 비폭력의 공기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평등하게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향한 시민의 열망은 결코 꺾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의한다. 치졸한 정부와 무책임한 교육청 관료들만을 믿고 기다리다 속절없이 포기할 만큼 우리가 멍청하고 나태하기를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존엄,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 자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조례이다. 우리는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던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학생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발걸음을 다시 옮길 것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청소년들과 이 조례의 탄생을 함께 일구어낸 교사·학부모·시민들이 힘을 모아 학생인권조례에 생동하는 힘을 불어넣고 교과부와 교육청을 진실의 길로 견인하는 실천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2012년 5월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혁명공동행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서울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